

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6. 12. 2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.11.18. 김윤정 의원 외 8명
- 나. 회부일자 : 2016.11.21.
- 다. 상정일자 :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(2016.12.2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김윤정 의원

가. 제안이유
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2)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
- 3)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 의무화(안 제4조)
- 4)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함(안 제5조)
- 5)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과 위탁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 및 제7조)
- 6)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학습자의 공공시설 이용 시 권익 보장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8조 및 제9조)
- 7)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(안 제10조)
- 8)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·점검 근거를 마련함(안 제11조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○ 본 조례안은 김윤정 의원의 대표발의 외 8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2016년 11월18일 제안되었고, 11월21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○ 조례안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,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였고,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.

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,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센터 등에 대한 지도·점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매년 6만~7만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 이들은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,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쉽게 비행과 범죄 환경에 노출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.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,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,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, 교육지원,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·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